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가.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이를 통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고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공모사업의 충청북도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나.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안 제6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공모사업에 관한 도의회 보고(안 제9조)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북도에서 지난 2년 간 진행한 공모사업<sup>10)</sup>은 485건, 예산규모는 2조 754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 나.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

- 이 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sup>11)</sup>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제정이 가능함
- 2025년 3월 12일 기준, 공모사업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8곳이며, 충북 지역 9개 시군에서도 시행 중임<sup>12)</sup>

10) 최근 2년간 선정 공모사업 현황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계               | 평균                |
|-----------|-------------------|----------------|-----------------|-------------------|
| 건수 / 예산규모 | 242건 / 1조 3,039억원 | 243건 / 7,715억원 | 485건 / 2조 754억원 | 242.5건 / 1조 377억원 |

11)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이하 생략)

- 그 밖에 조례안예고(2025. 3. 5. ~ 11. / 제출된 의견 없음)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수용(일부 조문 수정)]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 다. 주요 내용 검토

- 이 제정안은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체계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제목         | 구분   | 제목           |
|-----|------------|------|--------------|
| 제1조 | 목적         | 제6조  |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
| 제2조 | 정의         | 제7조  | 공모사업의 추진     |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8조  | 공모사업의 관리     |
| 제4조 | 도지사의 책무    | 제9조  | 도의회 보고       |
| 제5조 | 관리계획의 수립   | 제10조 | 포상           |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 공모사업, 총괄부서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민과 집행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함

### 12)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행 현황(2025년 3월 12일 기준)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광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 | 9  | 10 | 3  | 5  | 5  | 4  | 2  |    | 17 | 12 | 9  | 13 | 13 | 14 | 12 | 15 |    |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광역지방자치단체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43개)

※ 충북 지역에서도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음(제천, 진천 제외)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이 조례가 공모사업과 관련한 기본 조례임을 확인함
-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것과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한 것으로 의미가 있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였음
  -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통하여 해당연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현안 및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모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역할과 추진 절차를 포함하여 공모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관리사업 소요 발생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및 사업효과를 미리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충청북도에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됨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치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는 공모사업 관련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문성 있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8조**에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매년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실적, 공모사업 추진결과에 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의미가 있음
- 특히,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 등에 관한 분석 및 평가는 **안 제5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실행-평가의 순환을 통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다만, 공모사업 추진과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무분장 등은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9조**는 충청북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매년 공모사업의 진행 상황 등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공모사업에 관한 도의회의 사전 확인 및 사후 점검의 근거를 마련함
  - 특히, 1) 도가 신청하는 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과 2) 민간이 도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등을 도의회에 보고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관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음
  - 또한, 시급성이 있거나 보안상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보장함
- **안 제10조**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부서 및 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공모사업을 인정하는 적용례를 두어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였음

## 라. 그 밖에 검토 사항

- 충청북도 공모사업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이 가능한 조례안이다’는 의견을 제출함 (예산담당관-2564)

- 또한,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이 조례안은 충북의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양질의 국비 사업의 선별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의사입법담당관-748)

#### 마.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관한 적법성,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타당성)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전에 도의회에 보고 하고, 선정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도의회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바람직함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내용 및 자구 수정 등 집행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